

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제2차 본 회의 (2018.12.11.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	5
4	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7
5	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	9
6	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1
7	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	13
8	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	15
9	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	17

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개정이유

- 일자리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을 전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·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, 군수의 책무,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.(제 2조, 제 3조, 제 4조)
- 나.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.(제 5조)
 - 직업상담·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, 구인·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
- 다. 관계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.(제 6조)
- 라.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.(제 7조)
- 마.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.(제 8조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일자리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을 청년 등 전 군민에게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·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
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5.28.)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.
-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로 위임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3조)
- 2023년 12월 31일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5.28.)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.
-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2조)
 - 2023년 12월 31일
- 나. 상위법령 재기재·중복사항을 삭제·정비함.(안 제3조·제5조·제6조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
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제안이유

-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 중인 부르미택시 비용지원 대상자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변경하여 부르미택시 운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부르미택시사업 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른 제명과 목적조항 개정
- 나. 부르미택시 비용신청자를 변경함(안 제4조)
 -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 ⇒ 부르미택시 사업자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르미택시 운행에

따른 탑승비용 신청자를 대상마을대표자에서 택시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 5. 28.)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
-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3조)
 - 2023년 12월 31일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코자 하는 사항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
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5.28.)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.
-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3조)
 - 2023년 12월 31일
- 나. 상위법령 중복·재기재 사항 정비함.(현행 제2조·제5조·제7조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코자 하는 사항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제안이유

- 기존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인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규정사항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축소하여 주민의 이용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 삭제함.(안 제20조)
 - 조례 : 현수막 게시기간 10일 ⇒ 삭제
 - 법령 : 현수막 게시기간 15일 이내

나. 법령 위임범위 보다 낮게 규정된 과태료금액 조정함.(안 별표 6)

- 도로 입간판의 경우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,
- 현수막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과태료 금액
(조례) 33만원 이상 ⇒ (변경) 35만원 이상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기존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인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제안이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·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함(안 제3조~안 제8조)
도시재생위원회, 전담조직, 도시재생지원센터,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, 주민협의체 지원
- 다. 전문가 활용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라.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·제11조)
- 마.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(안 제12조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·창출 및 지역자원 등을 활용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·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 다만, 도시재생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2. 10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5.28.)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
- 동 법률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.(안 제3조)
- 나.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.(안 제4조)
- 다. 용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명시.(안 제6조)
- 라.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명시.(안 제7조)

마.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. (안 제9조)

바. 위원회 운영 등(안 제 12조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자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코자 하는 사항으로서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